

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2182
----------	------

2021년 3월 5일
보건복지위원회

I. 심사경과

1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1년 2월 5일 조상호 의원의 11명
2. 회부일자 : 2021년 2월 9일
3. 상정일자 :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

【2021년 3월 2일 상정·의결(원안 가결)】

II. 제안설명의 요지 (조상호 의원)

1. 제안이유

- 최근 카메라 기술의 발달 등으로 불법영상 촬영 및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.
- 특히 공공화장실과 모텔 등 숙박업, 목욕장 등 일상생활 속에서 이용이 빈번한 장소에서 불법촬영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바,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장소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믿고 이용할

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,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- 또한 뉴딜일자리로 운영되던 안심보안관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이를 신규 추진 예정인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으로 변경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공공화장실 등” 등에 대하여 정의함(안 제2조).
-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정함(안 제3조).
- 공공화장실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도록 함(안 제4조).
-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심보안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조).
-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자치구 및 서울지방경찰청,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(안 제10조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공중위생관리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참조).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Ⅲ. 검토보고의 요지 (수석전문위원 이문성)

1 조례안의 개요

- 본 개정안은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장소를 화장실에서 모텔, 목욕탕 등 공중위생업소까지 확대하려는 내용임.
- 또한 사업이 중단된 안심보안관을 시민감시단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음.

2 주요사항 검토

□ 불법촬영 예방 적용범위 확대 (안제2조 및 안제6조의2)

- 개정안(안제2조)은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적용범위를 공공 또는 민간화장실에서 카메라 설치 가능성이 높은 숙박업, 목욕장 등 공중위생업소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“공공화장실 등”의 정의에 공중위생업소를 포함하여 규정하려는 것임.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“공공화장실 등”이란 <u>공공화장실</u> 과 민간화장실을 말한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----- <u>공공화장실</u> , 민간화장실 및 공중위생

<p>2.·3. (생략) <u><신설></u></p>	<p><u>영업소를 -----.</u> 2.·3. (현행과 같음) 3의2. <u>“공중위생영업소”란 「공중위생관리법」에 따른 숙박업, 목욕장, 이용업, 미용업, 세탁업, 건물위생관리업 등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.</u>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 2018년 개정된 「공중위생관리법」에서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소에 불법촬영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, 이를 위반시 구청장에게 영업 정지나 일부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폐쇄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.

「공중위생관리법」

[시행 2018. 12. 11] [법률 제15873호, 2018. 12. 11, 일부개정]

제5조(공중위생영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) 공중위생영업자는 영업소에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4조제1항1)에 위반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.

제11조(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등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관광숙박업의 경우에는 해당 관광숙박업의 관할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

4의2. 제5조를 위반하여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

1)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(약칭: 성폭력처벌법) 제14조(카메라

-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불법촬영 예방 적용범위를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중위생업소까지 확대하여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.
- o 또한 시장으로 하여금 민간에서 운영하는 공중위생업소를 점검하거나, 탐지기 등 장비 대여를 통한 자체점검 및 자체점검 확인증 제공을 통해 민간에서 운영하는 공중위생업소의 점검유도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(안 제6조의2), 정의규정에서 확대한 사업 적용범위인 공중위생업소에서도 불법촬영 예방 사업을 실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음.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안심보안관) ① 시장은 공 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점 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<u>안심 보안관</u>을 운영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의 <u>안심보안관</u>의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</p>	<p>제7조(불법촬영 시민감시단) ① - ----- ----- 불법 촬영 시민감시단(이하 “시민감 시단”이라 한다)-----.</p> <p>② ----- <u>시민감시단</u>----- ----- -----.</p>

등을 이용한 촬영)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·판매·임대·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·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□ 변경된 사업명 현행화 (안제7조)

- 조례안은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의 명칭을 “안심보안관”에서 “불법촬영 시민감시단”으로 변경하였는데, 이는 2016년부터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해온 안심보안관 사업이 일자리정책과의 부적정 결정(일자리정책과-18821호)에 따라 2020년말로 폐지되면서, 이를 여성정책담당관이 직접 시민감시단의 형태로 전환·운영하는 것을 반영하여 현행화 시킨 것임.

현행	개정안
<p>제7조(안심보안관) ① 시장은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<u>안심보안관</u>을 운영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의 <u>안심보안관</u>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</p>	<p>제7조(불법촬영 시민감시단) ① - ----- ----- 불법 <u>촬영 시민감시단</u>(이하 “<u>시민감시단</u>”이라 한다)-----.</p> <p>② ----- <u>시민감시단</u>----- ----- -----.</p>

- 다만 지난 4년간 48억원 가량의 예산을 쏟아부어 운영한 안심보안관 사업이 이미 행정사무감사나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 시에도 여러번 지적된 것과 같이 집행실적은 있으나 실제로 적발하거나 검거한 사례가 없는 등 낮은 사업 실효성과 인력의 전문성 부재로 인해 폐지된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.

- 또한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이 사실상 기존의 안심보안관에서 명칭만 변경하여 유사한 형태로 추진하는 방식이 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세심한 집행계획 마련이 요구된다 할 것임.

3 종합 검토 의견

- 본 조례안은 시민들이 불법촬영에 노출되기 쉬운 화장실외에도 모텔 및 목욕탕 등 공중위생업소까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촬영 예방 사업의 확대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, 그 입법취지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음.
- 다만 폐지된 “안심보안관”을 “불법촬영 시민감시단”으로 개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수행인력의 전문성 부재 및 낮은 실적이 사업 폐지의 원인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, 기존 사업과 유사한 인력구성과 방식으로 시민감시단을 운영하기 보다는 사업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임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(조상호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182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2021년 02월 05일
발 의 자 :조상호, 권수정, 김경영,
김경우, 김소양, 김제리,
김화숙, 박기재, 이병도,
이영실, 이정인, 홍성룡
의원(12명)

1. 제안이유

- 최근 카메라 기술의 발달 등으로 불법영상 촬영 및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.
- 특히 공공화장실과 모텔 등 숙박업, 목욕장 등 일상생활 속에서 이용이 빈번한 장소에서 불법촬영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바,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장소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,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- 또한 뉴딜일자리로 운영되던 안심보안관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이를 신규 추진 예정인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으로 변경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“공공화장실 등”과 “공중위생영업소”의 정의를 규정함(안 제2조제1호 및 제3의2호 신설).
- 나. 공중위생영업소의 점검유도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의2 신설).

다. 안심보안관을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으로 변경하여 규정함(안 제7조 및 안 제12조제1항).

라.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의 협조대상에 공중위생영업자 등을 포함하여 규정함(안 제11조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공중위생관리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대상사유서 별첨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첨부)

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공공화장실과 민간화장실을”을 “공공화장실, 민간화장실 및 공중위생영업소를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2. “공중위생영업소”란 「공중위생관리법」에 따른 숙박업, 목욕장, 이용업, 미용업, 세탁업, 건물위생관리업 등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공중위생영업소의 점검유도 등) ① 시장은 공중위생영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공중위생영업소를 자체 점검하고자

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가 자체 점검하는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하여 자체 점검 확인증을 제공할 수 있다.

제7조의 제목 “안심보안관”을 “불법촬영 시민감시단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안심보안관”을 “불법촬영 시민감시단(이하 “시민감시단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안심보안관”을 “시민감시단”으로 한다.

제11조 중 “공공화장실 등의 관리자는”을 “공공화장실과 민간화장실의 관리자와 공중위생영업자 등은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안심보안관”을 “시민감시단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공공화장실 등”이란 <u>공공화장실과 민간화장실을 말한다.</u></p> <p>2. · 3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4. ~ 6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공공화장실, 민간화장실 및 공중위생영업소를 -----.</u></p> <p>2. ·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3의2. “공중위생영업소”란 「<u>공중위생관리법</u>」에 따른 <u>숙박업, 목욕장, 이용업, 미용업, 세탁업, 건물위생관리업 등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.</u></p> <p>4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의2(<u>공중위생업소의 점검유도 등</u>) ① <u>시장은 공중위생영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시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공중위생영업소를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<u>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가 자체 점검하는 공</u></p>

제7조(안심보안관) ① 시장은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심보안관을 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안심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1조(협조) 공공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시민의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위해 추진하는 시장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.

제12조(교육 등) ① 시장은 안심보안관,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중위생영업소에 대하여 자체 점검 확인증을 제공할 수 있다.

제7조(불법촬영 시민감시단) ① -----
----- 불법촬영 시민감시단(이하 “시민감시단”이라 한다)-----.

② ----- 시민감시단-----

-----.

제11조(협조) 공공화장실과 민간 화장실의 관리자와 공중위생영업자 등은 -----

-----.

제12조(교육 등) ① ----- 시민감시단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